

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(교부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</p> <p>제 1 조 (적용범위) (기재생략)</p> <p>제 2 조 (용어정의) ① (기재생략)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금융기관 「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」, 「B2B 업무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 <p>제 3 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 ~ 제 5 조(이용시간) (기재생략)</p> <p>제 6 조(수수료)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내용을 본점 및 영업점,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 개월 전에 게시하여 1 개월간 알립니다.</p> <p>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 ~ 제 19 조 (준거법) (기재생략)</p>	<p>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(교부용)</p> <p>제 1 조 (적용범위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 조 (용어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전자금융거래법」,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, 「B2B 업무규약」 및 동 「시행세칙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</p> <p>제 3 조(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) ~ 제 5 조(이용시간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6 조(수수료)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, 「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」 약관의 변경 조항을 준용합니다.</p> <p>제 7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)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, 만기를 90 일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. 다만, 2020.5.29.까지는 150 일 이내, 2021.5.29.까지는 120 일 이내로 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8 조 (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) ~ 제 19 조 (준거법) (현행과 같음)</p>	<p>규정명 변경 반영</p> <p>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준용</p> <p>단계적 만기 단축</p>

2. 개정 시행일 : 2019년 5월 30일

3.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